

앞으로는 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의무소방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,

의무소방원의 직권면직 절차 및 상이급여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1월 10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
행 정 안 전 부 관 장 진 영

●대통령령 제31148호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0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·유지·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3조제1항 제3호	300
---	---------------	-----

부 칙
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395호, 2020. 6. 9. 공포,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의 설치·유지·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20년 11월 10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균

국 무 위 원
문 화 체 육 박 양 우
관 광 부 장 관

●대통령령 제31149호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회 위원 등)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- 1. 기획재정부차관
- 2. 교육부차관
-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
- 4. 외교부차관
- 5. 법무부차관
- 6. 행정안전부차관
- 7. 보건복지부차관
- 8. 고용노동부차관
- 9. 여성가족부차관

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

⑤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촉위원의 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”을 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